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06가단114139 손해배상
원 고 A
피 고 1. B
2. C
3. D
변 론 종 결 2008. 4. 14.
판 결 선 고 2008. 5. 19.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D는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4. 8. 10.부터 2006. 11.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 B, C는 피고 D와 각자 위 40,000,000원 중 17,6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4. 8. 10.부터 2008. 5.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 60%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의 가.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 B, C는 피고 D와 연대하여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4. 8. 10.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8. 9.경 X대리운전의 대리운전기사인 피고 D에게 인천 서부경찰서에서 부산 동래경찰서까지 원고 소유의 부산 00고0000호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대리운전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다.

나. 이에 피고 D는 2004. 8. 10. 06:50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영동군 용산면 금곡리 소재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235km 하행선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다가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는 바람에 2차로로 진행하고 있던 화물차량과 부딪쳤다.

다. 위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은 차량수리비로 39,455,878원이 들도록 파손되었고, 이 사건 차량의 견인비로 50만 원이 지출되었다.

[인정 근거] 원고와 피고 B, C 사이 :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6, 7호증의 각 1, 2, 갑 제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와 피고 D 사이 : 자백간주

2. 판단

가.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1) 청구의 표시 : 위 제1항과 같다(다만, 원고는 위 손해액 중 일부인 4,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2)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는 2002. 12. 16.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서 'X대리운전'이란 상호로 대리운전서비스업을 영위하다가 2003. 5. 1. 폐업하였고, 피고 C는 2003. 5. 1.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서 'X대리운전'이란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리운전서비스업을 영위하다가 2003. 12. 29. 폐업하였으며, 피고 B는 2004. 4. 1.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서 'X-1 대리운전'이란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리운전서비스업을 영위하였는데, 피고 C도 위와 같이 자신의 명의의 대리운전서비스업을 폐업한 이후에도 위 사무실에서 계속하여 대리운전서비스업을 영위하였던 사실, 'X대리운전' 대표전화번호의 명의를 피고 B로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 C는 사실상 동업관계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피고들은 피고 D의 사용자로서 위와 같은 피고 D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이 사건 차량의 손해액 : 1,900만 원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멸실된 경우 그로 인한 손해는 원칙적으로 휘

손·멸실 당시의 수리비나 교환가격을 통상의 손해로 보아야 하되, 훼손된 물건을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데 소요되는 수리비가 물건의 교환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손해액은 형평의 원칙상 그 물건의 교환가치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할 것인바, 돌이켜 이 사건에 보건대, 이 사건 차량의 수리비가 39,455,878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차량의 가액이 1,900만 원인 사실은 피고가 자인하고 있는바(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가액이 4,000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의 수리비가 이 사건 차량의 교환가치를 초과하고 있으므로, 그 손해액은 이 사건 차량의 가액인 1,900만 원으로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차량의 견인비 : 50만 원(갑 제6호증의 1, 2)

(다) 공제 : 190만 원

원고가 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19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다.

(라) 최종인정금액 : 1,760만 원(=1,900만 원+50만 원-190만 원)

(3) 소결

따라서, 피고 B, C는 피고 D와 각자 위 4,000만 원 중 1,760만 원 및 이에 대한 불법행위일인 2004. 8. 10.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08. 5.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 및 피고 B, C에 대한 위 인정 범위 내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원근 _____